

IFRS in Focus

IASB와 FASB,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공동제안사항 발표

목차

- 제안사항
- 배경
- 적용범위
- 추후 논의될 항목
- '우량채권(good book)' vs '부실채권(bad book)'
- 예상신용손실에 대한 추정
- 표시와 공시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요점

- IASB와 FASB는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2차 공개초안(supplement)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번 2차 공개초안은 IASB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상각후원가와 손상에 대한 공개초안에 포함된 예상손실모형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 이번 제안사항은 개방형 포트폴리오(open portfolio) 기준으로 관리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제안된 손상모형에 따라 '우량채권(good book)'에 대한 예상손실은 존속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반면, '부실채권(bad book)'에 대한 예상손실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 제안된 접근법은 기업이 매 보고기간에 손실을 추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lifetime expected credit loss)은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 대손충당금(provision for credit loss)은 이자수익의 감소가 아닌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된다.
- 단기 매출채권은 이번 2차 공개초안에서 다루고 있는 손상 검토대상 아니며 수익인식 프로젝트의 논의사항 중 일부로 검토될 것이다.

제안사항

2011년 1월 31일, IASB와 FASB는 2009년 11월에 IA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인 ED/2009/11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 (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에 대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보충적 성격의 문서인 '금융상품: 손상 (Financial Instruments: Impairment)'이라는 제목의 2차 공개초안(이하 'supplement'라고 함)을 발표하였다. 이번 supplement에 포함된 제안사항은 IASB와 FASB가 각자 발표한 공개초안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로부터 수령한 feedback에 따른 IASB와 FASB의 검토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또한, IASB는 supplement에 표시와 공시규정을 제안하는 부록을 별도로 포함하였다. FASB는 아직 표시와 공시규정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supplement에 포함된 IASB의 제안사항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이번 supplement의 제안사항은 대출채권이나 채무증권과 같이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채무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이번 supplement는 IAS 39와 US GAAP의 발생손실 손상모형(*incurred loss impairment model*)을 예상손실 손상모형(*expected loss impairment model*)으로 대체하는 기존의 제안사항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번 제안사항은 개방형 자산포트폴리오(*open portfolio of asset*, 다시 말하면 구성항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포트폴리오)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방형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상모형의 적용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IASB와 FASB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supplement에서는 또한 개별 항목이나 폐쇄형 포트폴리오(*closed portfolio*)에 제안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자로부터 feedback을 요청하고 있다. IASB와 FASB는 폐쇄형 포트폴리오와 개별 항목을 다룰 때 응답자의 의견을 검토할 것이다.

배경

IAS 39 및 US GAAP 규정의 발생손실 손상모형은 손실의 인식을 지연시키고 미래지향적 정보(*forward looking information*)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당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IASB와 FASB는 각각 손상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였다. IASB의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미래 신용손실을 포함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될 것이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신용손실은 예상신용손실을 자산의 유효이자율에 반영하여 금융자산에서 인식될 이자수익금액의 감소로 인식될 것이다. 미래 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치의 후속 변경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신용위험이 자산의 가격결정에 핵심적인 투입변수이며, 따라서 미래 신용손실에 대한 최초 추정치는 이자수익 인식의 요소가 되어야 하는 반면 신용위험의 후속적 변경은 자산 가격결정의 일부가 아니므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다수의 응답자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이 개념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제안사항을 적용한 결과로 달성될 잠재적인 재무보고의 개선이 제안사항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요구될 과도한 원가와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다수의 재무제표 작성자는 제안사항이 개방형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적용범위

이번 supplement의 제안사항은 IFRS 9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되고 개방형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에 적용된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따른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은 이번 supplement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논의될 항목

IASB는 아직 최초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 전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안사항의 적용이 가장 어려운 분야(예를 들어, 개방형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feedback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기로 하였다. IASB는 이번 supplement의 제안사항에 대한 feedback을 검토하면서 나머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며 supplement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개별 금융자산, 폐쇄형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 기타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채권, 매입 대출채권, 투자채무증권 및 수취채권에 대한 손상검토
- 신용손실 측정방법
- '제각(write-off)'과 '부실자산(non-performing)' 용어의 정의
- 상각후원가 측정의 목적
- 이자수익의 인식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경과기간(vintage) 정보 및 신용도와 관련된 공시

논평

IASB가 발표한 금융자산 손상에 대한 최초 공개초안과 ED/2010/10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모두에 대해서 응답자는 매출채권을 최초 기대신용손실이 반영된 순액으로 인식(그 결과 예상신용손실이 별도의 대손비용이 아닌 수익의 감소로 인식됨)하도록 규정한 제안사항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IASB는 이러한 문제는 수익 인식 프로젝트의 일부로 논의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논의에 대한 결론을 손상지침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우량채권(good book) vs 부실채권(bad book)

이번 supplement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예상에 따라 '우량채권(good book)'과 '부실채권(bad book)'을 구분하고 있다. 보유 자산에 대한 기업의 신용위험관리목적이 채무자로부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에서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로 변경된다면 해당 자산은 '부실채권'으로 이전될 것이다. '우량채권'의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lifetime expected loss)는 존속기간에 걸쳐 인식되지만 '부실채권'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우량채권'과 '부실채권' 기준에 따라 자산을 구분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기업은 대손충당금(impairment allowance)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상기 기준에 따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손상 - '우량채권' 접근법 ('good book' approach)

이번 supplement는 예상신용손실을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금융자산(우량채권('good book'))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 기간비례법(time-proportional approach)을 적용한 예상신용손실과 (2) 예측 가능한 미래(foreseeable future, supplement에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고일 이후 최소한 12개월 이상인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논평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에 대한 총당금에 하한(floor)을 설정하는 기간비례법은 IASB와 FASB가 각자 발표한 최초 제안사항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동시에 각자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결과이다. IASB의 목적은 금융자산 가격결정의 요소로 신용손실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FASB의 목적은 모든 예상신용손실을 흡수하기에 충분하도록 총당금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은 기간비례법에 따른 예상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의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에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expected life) 대비 현행 연령(경과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대손총당금을 산정하는 방법 (직선법, straight-line approach)
- 포트폴리오의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에 기초하여 연금으로 전환하여 대손총당금을 산정하는 방법 (연금법, annuity approach)

기간비례법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연령(즉, 최초 인식 이후 경과기간)과 기대존속기간 모두 가중평균치(weighted average)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논평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옵션(prepaymen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연장옵션(extension option), 기타 옵션과 자산의 회수불능(defaul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존속기간은 단순히 계약상 만기에 근거하여 가중평균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자율 및 중도상환옵션이나 콜옵션과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요소의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선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할인된 예상손실 또는 할인되지 않은 예상손실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인된 직선법(discounted straight-line approach)이나 연금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무위험 이자율과 유효이자율 사이에서 합리적인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다.

논평

단일 접근법을 규정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ASB는 최종적으로 상기 3가지 방법 (할인되지 않은 직선법(straight-line undiscounted), 할인된 직선법(straight-line discounted), 연금법) 중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동의하였으며, 그 결과 보다 정교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춘 기업이 예상손실의 '더욱 정확한 배분'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예측 가능한 미래(보고일 이후 최소한 12개월 이상인 기간으로 정의됨)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과 동일한 금액의 최소 총당금잔액(minimum floor allowance)을 포함시키는 의도는 자산의 존속기간 중 초기에 예상보다 높은 부도율을 경험한 자산 종류에 대하여 충분한 총당금을 설정하고 기간비례법에 따른 누적 대손총당금이 부(-)의 잔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례

기업은 정상 대출채권(performing loans)으로 구성된 2개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A는 액면금액이 CU1,000,000인 대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트폴리오 B는 액면금액이 CU50,000,000인 우량 주택담보부 대출채권(mortgage loan)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는 supplement에서 허용된 기간비례법 중 할인되지 않은 직선법을 사용하여 2개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산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	가중평균 연령(경과기간)	가중평균 기대존속기간	기간비례금액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	대손충당금
	A	B	C	$D=A \times (B/C)$	E	F	$G \Rightarrow D \text{ 또는 } F$
A	3,000	1년	3년	1,000	1년	2,500	2,500
B	75,000	3년	12년	18,750	1년	12,000	18,750

포트폴리오 A의 경우 기간비례법으로 계산된 대손충당금보다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이 더 크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손충당금을 기록한다. 기간비례법으로 계산된 포트폴리오 B의 대손충당금은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보다 크다. 따라서, 기간비례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기록한다.

손상 - '부실채권' 접근법 ('bad book' approach)

자산이 '우량채권'에서 '부실채권'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신용손실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IASB supplement의 부록에서는 '우량채권'과 '부실채권' 간의 이전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은 기간비례법에 기초하여 이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우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일부는 이전되는 자산의 경과기간에 기초하여 자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이전된다. '우량채권'에 대한 충당금 계정은 소멸되며 '우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목표치가 새로 설정된다. '부실채권'으로 이전되는 자산과 관련하여 '우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부터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예상손실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사례

기업이 동질적인 대출채권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존속기간 동안 CU 100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대출채권에 대한 경영자의 목적이 원금과 이자의 회수에서 원금의 회수로 변경되었다. 기업은 내부 신용위험 관리절차에 근거하여 해당 대출채권이 '부실채권'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회수불확실한 대출채권의 경과 기간은 1년이고 기대존속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해당 대출채권과 관련된 포트폴리오의 '우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CU 20 ($1/5 \times 100$)은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이전될 것이며 나머지 CU 80은 손상차손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손충당금의 이전 이후에 포트폴리오의 '우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시점에서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논평

IASB는 또한 '우량채권'과 '부실채권' 간의 이전에 대하여 '전부제거법(full depletion)'과 '비제거법(no depletion)' 모두를 검토하였다. 전부제거법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우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부터 자산의 예상신용손실이 이전되기 때문에 '부실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지만 포트폴리오의 '우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이전된 금액으로 인하여 목표 수준을 하회하게 된다. 비제거법에서는 일단 자산이 '부실채권'으로 이전되면 포트폴리오의 '우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부터 어떠한 충당금도 이전되지 않으며 모든 예상손실금액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된다. 사용된 방법과 관계없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충당금 비용의 금액은 동일할 것이다. 단일의 방법이 대손충당금 조정내역에 대한 공시에 사용되고 조정내역이 기업 간에 비교

가능하도록 부분적인 제거 접근법(partial depletion)을 제안하는 IASB의 결정이 내려졌다.

예상신용손실에 대한 추정

IASB와 FASB는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은 이용 가능한 모든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를 고려하여 추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미래 발생할 사건과 경제지표에 대한 입증 가능한 예측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와 현재 경제상황도 포함될 것이다. 미래 상황에 대한 추정치는 이용 가능한 현행 정보와 경영자의 내부 예측 모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상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치는 최소한 매 보고일에 갱신되어야 한다.

논평

IASB와 FASB는 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자의 제안사항을 통합하였다. IASB의 최초 공개초안은 신용손실이 미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내부자료와 외부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미래 사건에 대한 추정치의 개발 방법에 대한 지침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FASB의 공개초안은 예상손실에 대한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고일 이후의 발생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업은 2개의 예상손실에 대한 추정치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기간비례법에 따라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lifetime expected loss)이고 다른 하나는 '우량채권' 접근법에 따라 최소총당금잔액을 결정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다.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은 일정한 기간이며 기간에 따라 변경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 분류 간에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시와 공시

이번 supplement의 부록에는 supplement의 제안사항과 관련된 표시와 공시를 제안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손상차손을 당기손익 내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신용손실을 이자수익의 감소로 표시하는 IASB의 당초 제안과 중요한 차이가 있음)

공시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도로 제안되었다.

- 대손충당금 계정 내의 변동
- '우량채권'의 신용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예상신용손실(특히 특정 포트폴리오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으로 인한 중요한 손익
-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절차 및 '우량채권'과 '부실채권'을 구분하는 방법
- 예상손실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
- 예상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투입변수와 가정
- 예상신용손실과 실제신용손실의 비교 (예: back-testing)

부록은 손상 관련 공시가 포트폴리오의 신용 특성을 반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분화된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요구되는 공시가 다른 문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보고서와의 상호참조로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공시규정을 포함한 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은행에 해당될 것이다.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및 Deloitte member firms는 본 출판물에 근거한 결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